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1079호 2015. 4. 6.(월)

## 차 례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47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1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434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로:중1-68호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452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457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458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3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469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42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47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04. 03.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검단로502번길 8외 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04. 03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5-04-03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81-4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02번길 8 (마전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0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02-2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161번길 41 (원당동)	2008-12-31	고산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78-6	인천광역시 서구 담지로104번길 7 (연희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4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26-6	인천광역시 서구 보듬5로 10 (오류동, 앨림앤키친)	2012-10-25	보듬로에서 다섯번째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001-1	인천광역시 서구 이화로26번길 1 (경서동)	2012-10-25	이화로 시작지점부터 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54-1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루비로134번길 6-15 (경서동)	2012-03-30	청라루비로의 시작점에서 1,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50-15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319번길 3-19 (경서동)	2012-03-30	청라커널로의 시작점에서 3,1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45-18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41번길 11-1 (경서동)	2012-03-30	청라한울로의 시작점에서 4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109-5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34번길 23-5 (당하동)	2008-12-31	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76-22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로8번길 17 (경서동)	2013-07-31	푸른로 시작지점부터 약 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434호

##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1-68호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명:중로1류68호선, 사업명:중로1-68호선 도로개설공사 (미개설구간)】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4. 1.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148, 173-154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도시계획도로(중로1류68호선)  
 【명칭】 중로1-68호선 도로개설공사(미개설구간)
3. 사업의 규모 : L=306m, B=20m, A=6,491m<sup>2</sup>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비고
				총폭	금회	총연장	기시행	금회	잔여	
도로	중로	1	68	20	20	2,696 (2,004)	2,143 (1,451)	306 (306)	247 (247)	(서구 연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동화엠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대원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133(가좌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6. 04. 14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 면적 (m <sup>2</sup> )	편입 면적 (m <sup>2</sup>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가좌동	173-148	잡	13,057	6,378	동화엠파크 주식회사	서구 영곡로 133(가좌동)	-	-	-	
2	가좌동	173-154	도	672	113	인천 서구					
계				13,729	6,491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6번 참조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3번 참조
9.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 2015-452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4월 6일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의 권익과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인원을 ‘13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개정(안 제3조)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포함(안 제4조)
-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4.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032-560-4192, FAX 032-560-2723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택법」 제52조에 따라”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운영등에 관하여”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로 한다.

제2조 중 “「주택법」에 의한”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조정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로, “1인을 포함한 13인”을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 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제2항 중 “주택허가담당”을 “공동주택관리센터담당”으로 한다.

제8조제4호 중 “다음 각호의 1”을 “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을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진행중”을 “진행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중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9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를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14조 중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를 “운영 등에 필요”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 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주택법」 제52조에 따라----- ----- ----- -----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 ----- -----.</p>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p>	<p>제2조(적용범위) ----- ----- -----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 ----- ----- ----- -----.</p>
<p>제3조(위원회 구성) ① <u>조정위원회</u>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u>1인</u>을 포함한 <u>13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3조(위원회 구성) ① <u>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조정위원회</u>(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u>1명</u>을 포함한 <u>10명</u> ----- ----- -----.</p>

②·③ (생략)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조정위원회는 원활한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분쟁
- 2. 관리비 운영 및 징수와 관련한 분쟁
- 3. 각종 공사 및 용역발주와 관련한 분쟁
- 4.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분쟁
- 5. 기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

<신설>

6.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제4조(기능) -----  
-----  
-----  
----- 각 호 -----  
-----.

-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 2. 자치관리 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담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 4. 공동주택(공용부분)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 7. (현행 제6호와 같음)



말한다)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정 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조정의결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생략)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구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 1 이상-----

----- 따라 -----

② 제1항에 따른-----

----- 따라 -----

③ 제2항에 따른-----

----- 따라 -----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현행과 같음)

② -----

----- 따라-----

제11조(조정외의 거부 및 중지) ① (생략)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조정외의 효력)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등)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조정외의 거부 및 중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진행 중-----  
-----  
-----  
-----  
-----.

③ ----- 제2항에 따른-----  
-----  
-----.

제12조(조정외의 효력) 제9조제3항에 따라-----  
-----  
-----  
-----  
-----.

제13조(수당등) -----  
-----  
-----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  
-----  
-----  
-----.

<p>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조정위원회의 <u>운영등에</u> 관하여 <u>필요한</u>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칙으로 정한다.</p>	<p>제14조(운영규칙) -----  -----  ----- <u>운영 등에 필요</u>-----  -----  -----  -----.</p>
--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457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4월 6일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이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법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율방재단의 방재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제명변경
  - ⇒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변경
-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안 제3조)
  - ⇒ 단장 선출을 지역자율방재협의회에서 호선에서 동 방재단 대표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에 따라 선출하도록 변경
  - ⇒ 부단장 1인 추가

- ⇒ 동 방재단의 구성 및 구 방재단과의 관계 명시
- ⇒ 단원 가입자격을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였던 것을 개인으로만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
- 구 자율방재협의회 정비(안 제5조)
  - ⇒ 협의회인원을 30명 이내로 제한
  - ⇒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단원 해임 조항에 방재단 금지행위 추가 및 협의회 심의의결 조항 추가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등 별지서식 개정

###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안전총괄실, 전화 032-560-2880, 팩스 032-560-27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2015-457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3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

② 단장은 동 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부단장, 간사는 동 대표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동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서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한다.

⑦ 동 방재단원은 구 방재단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⑧ 동 대표는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의 참석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한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임원 및 임기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 ② 단장은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 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비상연락망정비 등을 담당한다.
- ⑤ 동 대표는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서구 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협의회는 회장 또는 단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재단의 활동방향 및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2. 제10조의 제4호, 제5호에 따른 단원 해임사항
  3. 구청장이 그 밖의 방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⑥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해임) 단장 또는 동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단원을 해임 할 수 있다. 단,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서구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 및 교육, 훈련 참여 등을 게을리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10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제7조(임무) 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 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제출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
  11. 안전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12. 그 밖의 재난안전 관련 활동
-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하되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 등을 이용한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장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 시 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방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비, 여비, 유류비 등 필수경비. 다만, 식대 및 여비 등 실비는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단, 자연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의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제10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의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1조(출입증 발급)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하며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해당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3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매분기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 호

# 위 축 장

소 속  
성 명

귀하를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  
방재 단장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별지 제2호서식]

##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

등록번호 : \_\_\_\_\_

성 명	(성별)남,여	생년월일		혈액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상기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인)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 00동 대표 귀하

[별지 제3호서식]

## 활 동 확 인 서

성 명	(인)	등록번호	※ 서식2의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 유	※ ○ 태풍. ○ 지역 집중호우, ○ 지역 제설 등	
	방 법		
	시 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시간)	
	장 소		
	내 용	※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 지역 사전예찰, ○시간 ○○ 마을 차량통제, ○ 시간 등	
[건의사항]			
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명	(인)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써 상기와 같이 활동 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

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상 황		비 고
		횟 수	시 간	
1				
2				
3				
4				
5				
6				
7				
8				
9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장    0 0 0 (인)

[별지 제5호서식]

##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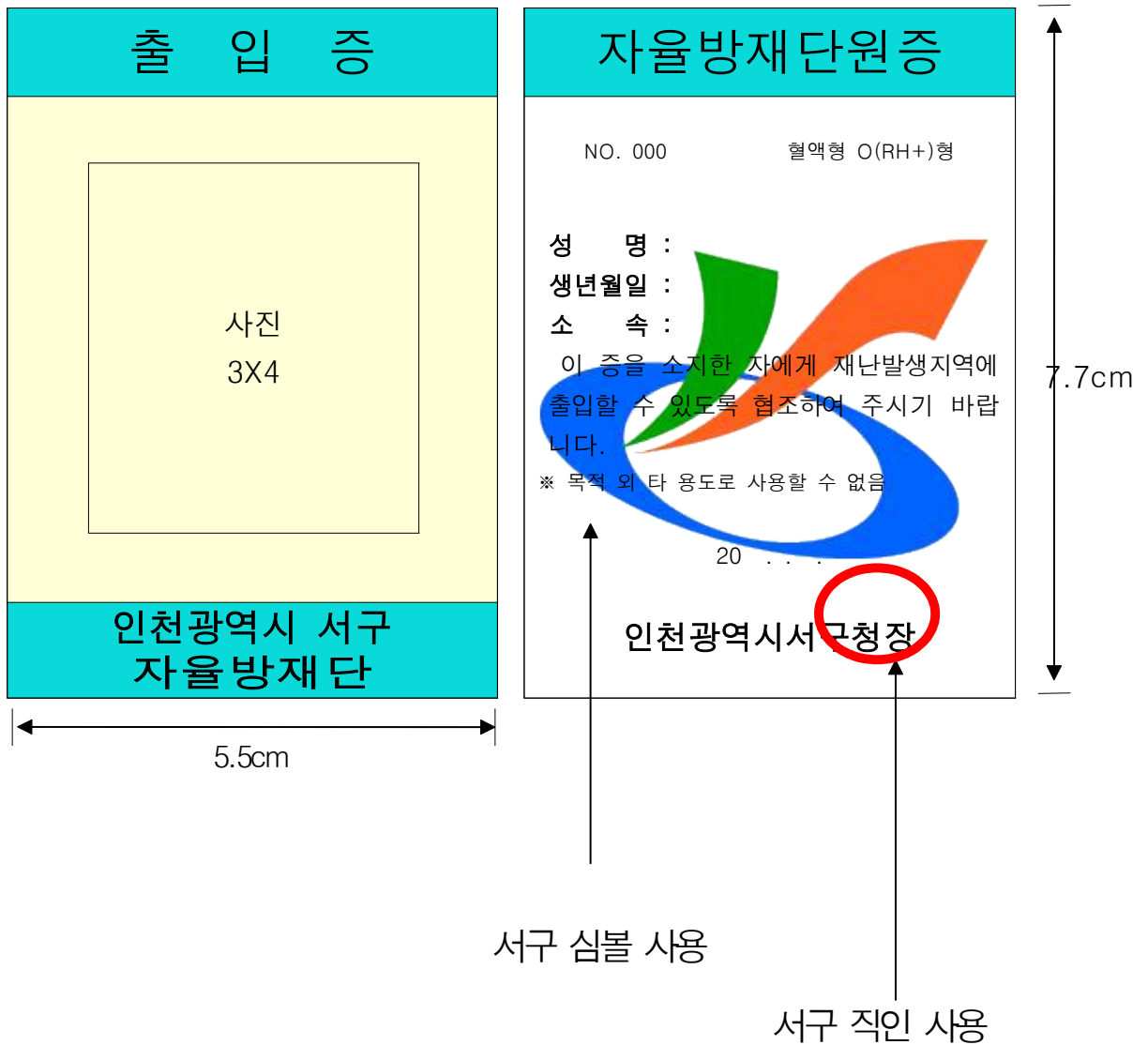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

월별	주요내용	비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 자치단체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되, 세부사항은 별도 작성 가능

[별지 제6호서식]

출 입 증



## 관계법령 발췌

###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군·구 단위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로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61조(소집)**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8.22.]

**제65조(예산 지원)**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6.> [전문개정 2012.8.22.]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458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4월 6일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는 사항임.

#### 2. 주요내용

- 2014.11.3.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업무 담당 과장” 을 “재난업무 담당 실장” 으로 변경하고, “재난업무 담당 국장” 을 “재난업무 담당 실장” 으로 변경함.(안 제9조, 제10조)
-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 심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항 신설함(안 제12조의2)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맞게 띄어쓰기

###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안전총괄실, 전화 032-560-2880, 팩스 032-560-27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2015- 458호

##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67조 규정에 의한”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금”을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잡수입”을 “그외수입”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으로, “장기예치기금액”을 “의무예치금액”으로,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을 “해당년도 사용가능액”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를 “(의무예치금액의 예치·관리)”로 하고, 같은 조 중 “장기예치기금액”을 “의무예치금액”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를 “(사용가능액의 운용·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사용가능액은 제6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을 “사용가능액”으로 한다.

제6조제13호 중 “영 제74조 제1호, 제2호”를 “영 제74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4조제6호에 따라”로, “소요된”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밖에”를 “그 밖 에”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담당과장”을 “담당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난관리담당”을 “재난관리기금 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담당국장”을 “담당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촉 한다.”를 “위촉하며, 공무원은 재직기간을 임기로 하고, 민간전문가는 2년으 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재난관리업무 담당이” 를 “재난관리기금 담당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 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 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제12조제2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 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 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을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 에”로 한 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서구”를 “인천광역시 서구”로 한다.

제15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  
(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  
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  
년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재난기금의 용도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  
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  
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인천  
광역시서구의 지정금고(지방재  
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  
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년도 사용  
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  
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  
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  
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  
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 1. ~ 12. (생략)
- 13. 영 제74조 제1호, 제2호에

제2항-----

-의무예치금액-----

-----해당년도  
사용가능액-----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관  
리) 의무예치금액-----

-----제1항에 따  
라-----

제5조(사용가능액의 운용·관  
리) ① 사용가능액은 제6조에  
따라-----

② 사용가능액-----

제6조(기금의 용도) -----

- 1. ~ 12. (현행과 같음)

- 13. 영 제74조-----

규정된 사항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 영 제 74조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하 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생 략)

③ 그밖에 기금의 용자조건 등 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 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 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담당

② (생 략)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 이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구청장은 재난과 관련이 있 는 구 소속 국·실·과장과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⑤ (생 략)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 영 제 74조제6호에 따라

필요한

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제9조(회계공무원) ①

1. ----- 담당 실장

2. --- 재난관리기금 담당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담당실장

④ ----- 위촉하 며, 공무원은 재직기간을 임기 로 하고, 민간전문가는 2년으 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안전총괄실 재난관리업무 담당이 된다.

<신 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3. (생략)

<신 설>

- 4. (생략)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략)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 운용계획 및 당해연도의 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 ③ (생략)

<신 설>

⑥ -----  
-----  
-- 재난관리기금 담당이 --.

⑦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  
----- 각 호 -----  
-----.

- 1. ~ 3. (현행과 같음)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해당연도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관계법령 발취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8.23., 2014.2.5.>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4.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 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 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4.2.5.>
- ③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2.5.>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4.2.5.>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469호

##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4. 6.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개정이유

-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노인인력개발센터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됨에 따라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맞도록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운영위원회에 관한 법령 등 별도 규정사항에 대한 정비
- 센터장의 자격기준을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면직기준 신설
- 노인인력개발센터 자체 운영규정 제정근거 마련
-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 4. 27.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노인장애인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032-560-4971, FAX 032-560-2741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

자 치 법 규 명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개 정 이 유	○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노인인력개발센터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됨에 따라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 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맞도록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운영위원회에 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 조항 삭제 - 운영위원회 기능, 구성, 위원장의 임무 등 세부사항은 센터 자체 운영규정에 내용 마련 ○ 센터장 자격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변경 ○ 센터장 면직기준 마련 (신설) ○ 직원의 보수 : 市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지침에 따름 ○ 센터 운영규정 제정·개정 조항 마련 (신설)
개 정 안	“별지 참조”
신·구조문대비표	“생략”-전부개정
관계 법령 발체	○ 노인복지법 제31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관련 사업 계획	“해당 없음”
예 산 수 반 사 항	“해당 없음”
기타 참고 사항	“해당 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와 센터 내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4조(직원의 임면) ① 직원(센터장 포함)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그 밖의 직원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센터장이 임면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센터장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정신상의 질병 또는 국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복무위반, 센터 운영 및 직무수행에서의 위법, 부당, 부적절 행위 등으로 센터장으로서의 자격이 부적격 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직원신분보장) ①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액의 증감과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원 증감 및 직제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의 근무상한 연령은 만 65세로 하고, 그 밖의 직원은 만 60세로 한다.

제6조(자격요건) 센터 직원(센터장 포함)의 자격기준은 [별표1]의 각 직급별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7조 (조직체계 및 정원) 센터의 조직체계 및 정원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센터장은 센터 직원의 인사 및 징계의 공정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센터 내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9조(보수 등) ① 센터 직원의 보수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

② 센터 직원의 보수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0조(복무) 센터 직원의 출장,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1조(재원) 센터 운영 및 노인 일자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보조금
2. 그 밖의 수익금 등

제12조(회계관리)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회계 관리는 구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같은 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 회계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센터의 사업 및 예산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 할 수 있다.

④ 센터 회계에 관하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13조(물품의 관리) ① 센터장은 물품관리 직원을 지정하여 물품의 취득, 보관, 폐기

등에 대해 장부를 비치하고 전반사항을 관리한다.

② 물품 및 장비관리는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보조금 관리) ① 센터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 지출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등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자료요구 및 검사) 센터장은 구청장이 센터 사업 및 예산운용에 관하여 자료를 요구할 때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결산) 센터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록과 사업실적보고서,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0조의 첨부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공인)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관리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직인
2.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 직인
3. 그 밖에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작한 직인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별표3]과 같다.

③ 공인의 관리는 센터장이 하며 기타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운영규정)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복무관리, 문서관리 등에 관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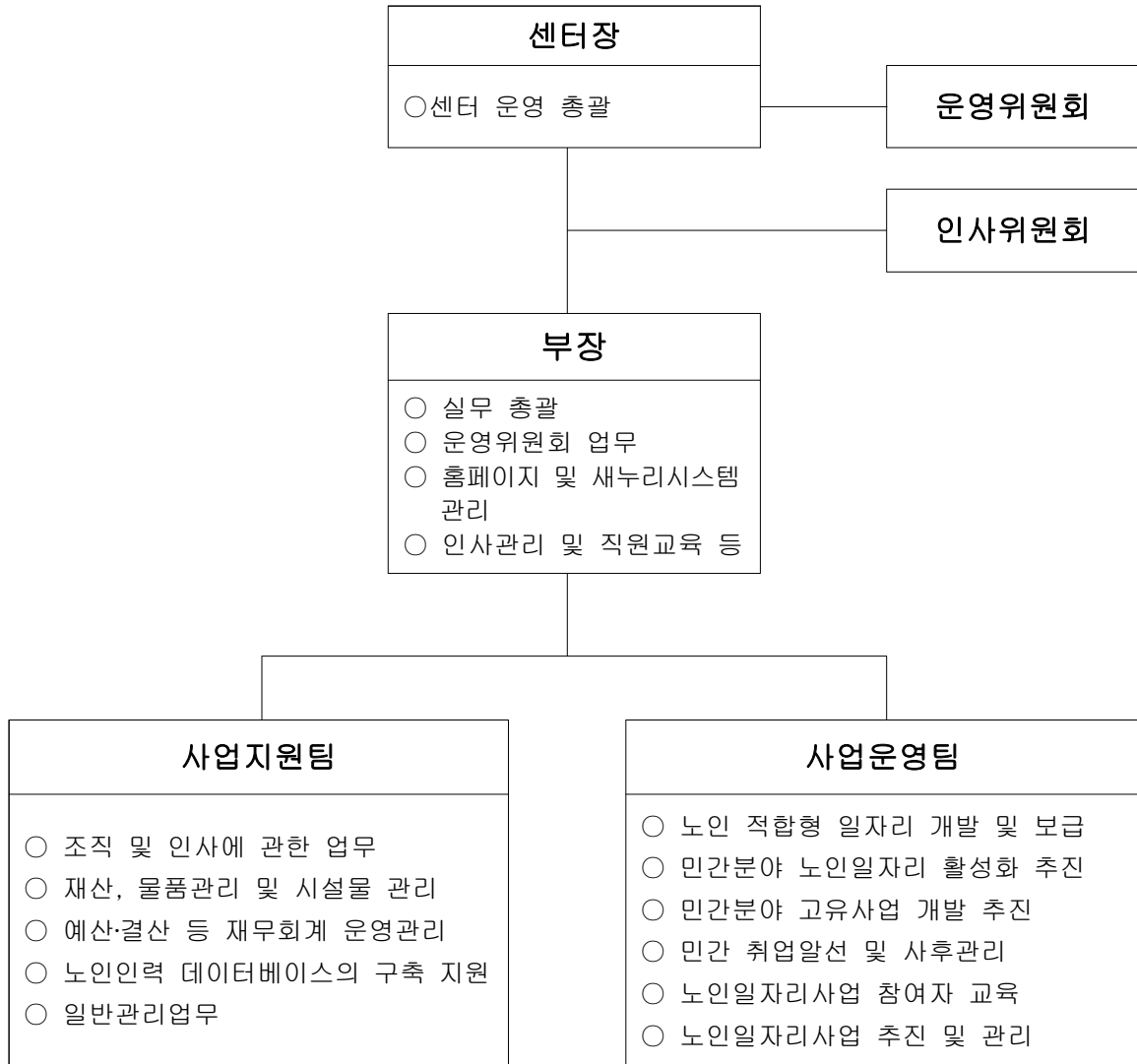
## [별표 1]

##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직원 자격기준(제6조 관련)

구 분	자 격 기 준
센터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부장 <1급>	1.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을 4년 이상 담당할 경력이 있는 사람 3. 직업상담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반 기업의 경영유통(마케팅)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직업상담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 퇴직자로서 재임기간 중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과장 <2급>	1.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3년 이상 담당할 경력이 있는 사람 3.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반 기업의 경영유통(마케팅)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리 <3급>	1.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2년 이상 담당할 경력이 있는 사람 3. 직업상담사 3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반 기업의 경영유통(마케팅)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직업상담사 3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주임 <4급>	1. 사회복지사 또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1년 이상 담당할 경력이 있는 사람 3. 일반 기업의 경영유통(마케팅)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2]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조직체계(제7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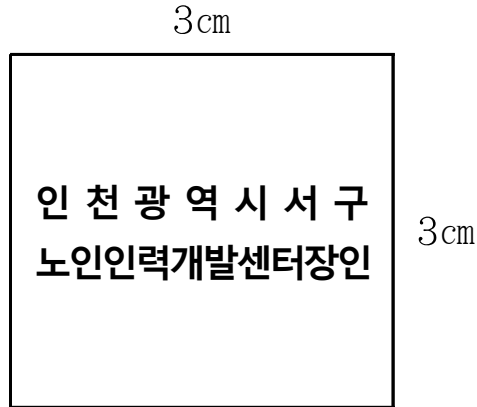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직급별 정원(제7조 관련)

[단위 : 명]

구 분	계	센터장 (시설장)	일 반 직			
			부장 (1급)	과장 (2급)	대리 (3급)	주임 (4급)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직급 및 정원)	8	1	1	2	2	2

[별표 3]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인**(제17조 제1항 제1호 관련)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인**(제17조 제1항 제2호 관련)

